

부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단354189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4. 26.

판결 선고2018. 5.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08,0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2016.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4. 접수 제2922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2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35,891,569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4. 접수 제2922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2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35,891,569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STX조선해양'이라 함)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보험금액 : 1억원, ■ 피보험자 : STX조선해양,

■ 보험기간 : 2015. 7. 21. ~ 2016. 7. 20.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STX조선해양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경영악화 등으로 2015. 11.경부터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2) 피고 회사가 2016. 5. 17.경 STX조선해양에 대하여 종업원들의 생계의 위협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제공된 보험증권으로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STX조선해양이 피고 회사의 위 임금체불에 따른 대위변제를 사유로 2016. 8.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 체불임금의 합계인 97,908,020원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6. 10. 14. STX조선해양에게 위 97,908,0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 B는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1) 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5. 12. 4. 피고 C 앞으로 2015. 12.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함)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2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자인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기 진행되어 2017. 11.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 C은 위 채권최고액 1억원을 배당받고,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110,107,620원 상당의 채권 중 33,799,589원을 배당받아 가압류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인 64,108,431원(= 97,908,020원 - 33,799,589원(배당비율 34.52%)) 상당은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198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다른 한편 위 배당절차에서 20,884,096원 및 108,881,755원 상당의 채권금액 소유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각 배당비율 34.52%인 5,506,127원 및 37,587,917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97,908,0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2016.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2015. 11.분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여 2016. 1.분 이후로 체불이 이어지는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 B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 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6. 10. 14. STX조선해양에게 위 97,908,0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권자들을 위한 총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는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3,800만원을 대여하고 2015. 11. 30.경 4,000만원을 대여한 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농협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3,800만원 돈거래에 관한 뚜렷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C이 2015. 11. 30. 피고 B에게 송금한 4,000만원은 같은 달 25. 피고 B로부터 입금받은 돈 4,000만원을 그대로 송금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 사이 돈거래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들의 관계 등에서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4. 접수 제2922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2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35,891,569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문헌만

별지

1) 아래에서 보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2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등 피고 B의 채권자들의 채권합계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자인농업협동조합의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2억 3,900만원 상당인데, 그 채권자들이 34.52% 상당을 배당받고 나머지 1억 5,500만원 상당은 배당받지 못하였던 점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부동산의 크기, 피고 B의 지분(1/2), 2015년 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된다.